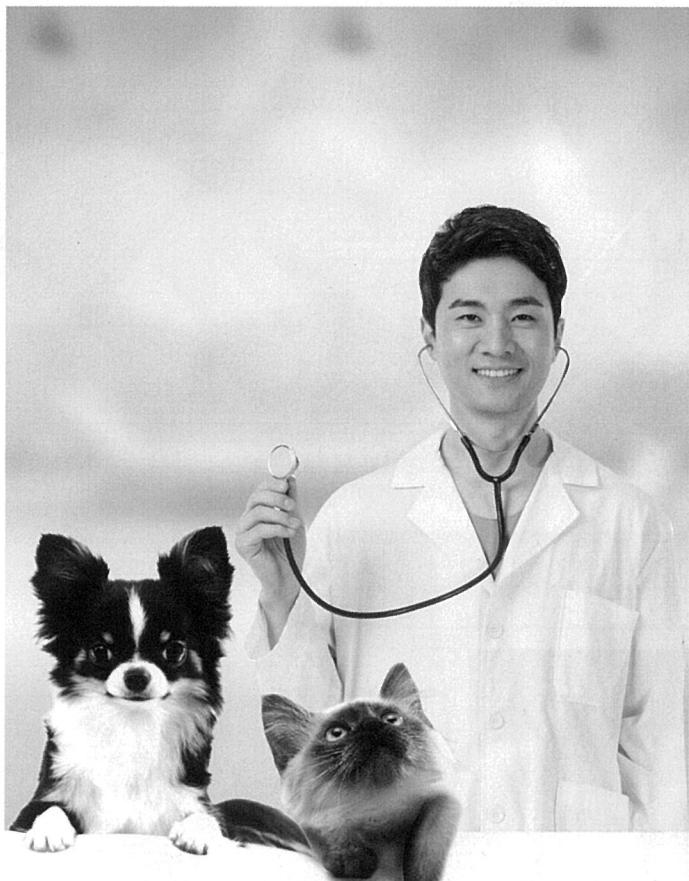


한두환 수의사 변호사의 법률칼럼 - 수의사의 생활법률 (24)

처방전 발급과 약품 취급에 대한 제한

한 두 환
관악법률사무소
변호사
today-we@hanmail.net



명의동물병원의 단골인 이견주씨는 반려견 순돌이가 식욕이 없고 구토를 하자 김명의 수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견주씨는 순돌이의 증상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김명의 수의사는 순돌이가 급성 위염일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이견주씨는 그에 맞는 약을 달라고 하였고 김명의 수의사는 항구토제와 정장제 등의 처방전을 작성해주었다. 이견주씨는

퇴근 길에 명의동물병원에 들러서 처방전을 받아갔다. 이견주씨는 동물용 의약품 취급 약국에서 약물을 구입하여 순돌이에게 먹였고, 순돌이는 위염 증상이 개선되었다.

며칠 후 명의동물병원의 박테크니션은 감기 증상이 있었다. 김명의 수의사는 박테크니션에게 감기에 맞는 항생제와 소염제 등의 처방전을 작성해주었지만, 처방전의 환자에는 순돌이를 기재하였다. 박테크니션은 동물용 의약품 취급 약국에서 약물을 구입하여 먹었고, 역시 감기가 한결 나아졌다.

김명의 수의사는 각 어떤 불법행위를 범한 것일까? 김명의 수의사는 순돌이와 박테크니션에게 각 증상에 맞는 약을 처방하였고, 그 결과 위염과 감기가 나았다. 더욱이 박테크니션에게 처방한 처방전에는 순돌이가 환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어떤 불법을 범한 것인지 각 행위마다 살펴보자.

순돌이에 대한 처방전에 대하여

순돌이는 명의동물병원의 단골 환자이므로 순돌이에 대한 처방전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투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명의 수의사는 전화로 이견주씨와 상담을 하고 순돌이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한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경우에도 김

명의 수의사가 순돌이에 대한 [진료]를 한 것이라면 처방전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동물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보호자와의 상담만으로 진단한 경우는 [수의사법]상의 [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본 칼럼 제19회 참조).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권해석은 실제 재판에서 유력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고, 유권해석이 [수의사법]에서 ‘직접 진료’라고 규정한 취지를 십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유권해석의 입장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김명의 수의사는 순돌이를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것이 된다. 이는 [수의사법] 제41조 제2항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만일 김명의 수의사가 순돌이에 대한 약을 판매한 경우라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명의 수의사가 순돌이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는 [수의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런데 만일 김명의 수의사가 처방을 해준 것이 아니라 이견주씨가 순돌이의 증상을 보고 항구토제 등을 요구하였고, 그 요구대로 약물을 판매한 경우라면 어떨까? 즉, 보호자가 요구한대로 항구토제 등을 판매한 경우는 처방전을 발급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을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제22조 제1

항 제5호는 「동물병원개설자는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의 진료를 행한 후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약국개설자로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수불대장을 비치하고 수불현황을 기록하여 이를 1년간 보존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의사는 동물용 의약품을 보호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는 있으나,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환자 동물을 진료한 후에 판매하여야 한다.

역시 김명의 수의사는 순돌이를 진료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견주씨에게 항구토제 등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테크니션에 대한 처방전에 대하여

김명의 수의사는 명목상 순돌이에 대한 처방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박테크니션이 복용할 약물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는 명목상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상의 행위로 판단하게 된다. 즉, 김명의 수의사는 사람에 대한 처방을 한 것이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상의 [의료인]에 수의사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김명의 수의사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의료법] 제87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김명의 수의사가 처방전 없이 박테크니션에게 명의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항생제 등을 직접 지어준 경우라도, 이 역시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처벌이 가능하다.

처방전과 약물의 중요성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약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동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와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의사가 처방전의 발급이 가능하더라도 그 대상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은 중대한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 역시 유념해야 하겠다. □